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

- 대상자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에 거주하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(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기복무 군인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, 북한이탈주민 등)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구성원.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
- 청약자격요건 : 입주자모집공고
 - ※추천기관
 - ① 장애인 :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
 - ② 국가유공자 등 :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
 -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: 국방부 국군복지단
 - ④ 중소기업근로자 : 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

■ 입주자 저축 구분
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인, 장애인	필요없음
장기복무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)

■ 청약예금 예치금액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)

청약가능 전용면적	예치금액		
	서울 / 부산	기타광역시(대구광역시)	경상북도
85㎡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
구분		74A	74B	84A	84B	합계
일반 (기관추천)	장애인	1	1	6	1	9
	국가유공자 등(보훈처 추천)	1	1	6	1	9
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1	1	5	1	8
	중소기업 장기근속자	1	2	10	2	15
합계		4	5	27	5	41

[선정방법]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.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.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 배정)에서 제외되며, 계약불가]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